탄 원 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 항소심 2026노2322
피고인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원심 2025고합1764(2025고합1766 병합)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개별 행동과 그 법적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이 제한된 일의 중대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판단은 높은 직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직권을 행사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각각 가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법의 엄정함과 개인별 책임의 정확한 구별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원심의 불리한 판단과 국회 2차 봉쇄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선고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여 실제 2차 봉쇄가 일어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출입이 제한된 결과는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한 이상, 지시를 내린 상황이 급박했다거나 상급자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 탄원은 그 결과를 부인하는 대신, 누구의 어떠한 권한 행사와 행위가 그 결과에 이어졌는지 엄밀하게 구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3. 직권남용의 행위와 법률상 결과를 분리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부당한 직권 행사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또한 대법원 2020도15105 판결은 해당 직권의 법령상 목적, 행사 당시의 필요성과 상당성, 허용되는 요건 등을 종합하여 남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포고령 발령·경찰에 대한 요청과, 경찰관에게 발생한 구체적 행위·국회 출입 제한 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각각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판례가 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원심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포고령의 문안, 발령, 경찰 전달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연락한 일은 선고 보도에 나타난 핵심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포고령을 알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진술은 경위를 살펴볼 자료이지만, 통화 내용 전체를 입증하는 기록과 같지는 않습니다.

포고령의 초안 작성, 최종 문구의 결정,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행위, 경찰에 전달한 내용,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주체와 시점,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피고인의 발령과 요청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준비·작성 행위까지 한꺼번에 귀속하지 않도록, 반대로 실제 행사한 권한을 빠뜨리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5. 경찰에 대한 요청과 2차 봉쇄의 인과관계를 살펴주십시오

공개된 선고 보도는 피고인의 국회 출입 차단 요청과 실제 경찰의 2차 봉쇄 사이에 연결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전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한 전달 과정의 착오라고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직권남용의 법률상 책임은 요청의 정확한 내용, 그것을 받은 경찰 지휘부의 판단과 명령, 현장 경찰관이 실제로 한 일, 제한된 권리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온전히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에 별도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선행 요청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뒤따른 모든 행동을 피고인 혼자 결정한 것처럼 볼 수도 없습니다. 기록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의 범위에 맞춰 책임의 크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직접 병력 출동 지시와 경찰 관련 요청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2026년 9월 21일 선고 취재 보도는 원심이 피고인의 특전사·수방사 병력 국회 출동에 관한 직접 지시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포고령 발령과 경찰에 대한 출입 차단 요청은 별도로 인정했다고 전합니다. 두 판단이 서로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어느 한 지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다른 지시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명되지 않은 직접 병력 출동 지시를 이미 인정된 경찰 관련 행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으로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각 행위의 상대방, 시점, 실제 이행 여부와 법률상 결과를 구별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공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7. 유리한 사정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계획·주도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점,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건의를 거부한 점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사정이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요건을 곧바로 부정하거나 이미 발생한 국회 봉쇄 결과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서는 잘못의 내용뿐 아니라 개별적 관여 정도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보시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와 다른 관계자들의 판단을 구분하고, 위해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 선택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의미 또한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과도한 관용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8. 형법 제51조에 따른 형의 균형을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 2차 봉쇄의 실질적인 결과와 지휘관의 책임은 매우 중대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동시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 다른 직접 지시에 관한 증명 정도, 사전 관여의 정도는 구별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원심 징역 10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여러 혐의를 심리한 병합 사건 전체에 대한 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별도 10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이미 살핀 사정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자료인 양 반복하기보다, 각 행위에 관한 법적 판단과 양형상 무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세심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권력이 국회의 권리를 제한한 결과는 엄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권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한 행동, 실제 발생한 결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 역시 공정한 재판의 본질일 것입니다. 박안수 전 총장에게 인정되는 책임을 조금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관대한 양형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작성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9.28

2026년 9월 21일 선고영상 게시 안내 및 관련 사건 표시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gubun=271&pageIndex=1&searchWord=&seqnum=311

[2] 뉴스하다, 이창호 | 2026.09.22

원심 선고 내용과 주요 양형사유에 관한 보도

https://newshada.org/6830/

[3] 아이뉴스24, 최기철 | 2026.09.21

원심 선고와 혐의별 판단에 관한 취재 보도

https://ibiz.inews24.com/v/2008018

[4] 참여연대「그사건그검사」| 2026.10.23 기준

항소심 사건번호·재판부 및 진행 경과 기록

https://watch.peoplepower21.org/WatchPro/case/332/

[5] 머니투데이, 안채원 | 2024.12.05

2024년 12월 5일 국회 질의에서의 피고인 답변 관련 보도

https://www.mt.co.kr/politics/2024/12/05/2024120516014581317

참고자료

[6]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31 기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23조

[7]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 2020.01.30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행위에 관한 판례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6973

[8] 대법원 2020도15105 | 2022.10.27

직권남용 판단 요소에 관한 판례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8871

[9]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31 기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